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제 정 : 2017.01.04.

개 정 : 2018.07.23.

개 정 : 2025.07.31.

제 1 조 (목적) 이 지침은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”법“이라 한다) 제58조, 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“금융소비자보호법”이라 한다) 제19조에 의거, 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,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,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그 외 관련 법규와 집합투자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.

제 3 조 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를 말한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, 판매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으로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로 구분한다. 운용보수는 운용기간동안 받는 일정한 금전을 말하고,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(법 제86조, 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계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 가능)를 말한다.
 - 나. 판매보수 :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 - 다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증권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 보관·관리의 대가로 집합 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 -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수행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 - 마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2. 수수료 : 투자자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, 투자자문·투자일임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

접 받는 금전으로서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로 구분

나. 환매수수료 : 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안정성과 환매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에 편입

다. 투자일임수수료 및 투자자문수수료 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 또는 투자자문 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 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, 그 성과와 상관없이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기본수수료와 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기본수수료 외 추가로 지급받는 성과수수료로 구분한다.

제 4 조 (수수료의 부과기준)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행위, 투자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,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수수료 부과절차) ①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, 규모,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.

②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회사는 집합투자계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
④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운용기간 중 인상 등의 이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혹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⑤ 투자일임수수료 및 투자자문수수료의 경우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는 투자일임(자문)계약서에 따른다.

제 6 조 (투자자문·투자일임 수수료 체계) ①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·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지급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1. 기본수수료만 지급(이하 이 조에서 “기본형”이라 한다)
2.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(이하 이 조에서 “혼합형”이라 한다)
3. 성과수수료만 지급(이하 이조에서 “성과형”이라 한다)

② 혼합형의 기본수수료는 기본형의 기본수수료보다 적어야 한다.

③ 혼합형 또는 성과형의 경우 운용성과가 기준지표(BenchMark)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(負)의 수익률을 나타낼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
제 7 조 (성과수수료의 수령기준) 회사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1.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
2.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 - 가. 성과수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등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
 - 나.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
 - 다.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(負)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
 - 라. 그 밖에 성과수수료의 산정방식,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

제 8 조 (수수료의 변경) ①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변경 등의 이유로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(또는 수익자 동의)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,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별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.

② 회사는 투자일임수수료 또는 투자자문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서 또는 투자자문계약서의 변경 후 시행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중액 및 감액, 중도해지 등) ① 계약금액이 중액되는 경우에는 중액 금액에 계약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.

② 투자자문·투자일임 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또는 순자산총액에 운용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.

③ 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당 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미경과 운용 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반환한다.

④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에 운용경과 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, 수수료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감액 금액에 계약 잔여 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.

제 10 조 (수수료의 고지)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(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료)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시기, 금액 등의 수수료의 부과에 관련한 사항을 투자일임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설명의무)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1항 및 동시행령 13조에 따라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함께 이 지침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투자광고) 회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3항에 따라,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공시)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

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이 지침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